오송 힐데스하임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청원군 건축과 – 제11173호(2008. 3. 1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43블럭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1층, 지상23~28층 8개동 4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면적형	공급세대	세대별계약면적					대지지분	최고층
					세대별 공급면적			세대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	계		
					전용면적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21854-01	2008000325	145	132	109.5318	35.6001	145.1319	42.3793	187.5112	84.9952	23층
	21854-02	2008000325	166	216	132.6331	33.7983	166.4314	51.3175	217.7489	102.9215	28층
	21854-03	2008000325	212	54	174.7978	37.7662	212.5640	67.6316	280.1956	135.6407	28층

(단위 : 원)

주택형	세대수	분양가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5%)	2차 (5%)	1차 (12%)	2차 (12%)	3차 (12%)	4차 (12%)	5차 (12%)	30%
								계약시	2008. 5. 20	2008. 9. 22	2008. 12. 22	2009. 4. 20	2009. 8. 20	2009. 12. 22	입주지정일
145	3	1층	338,640,000		35,382,783	303,257,217	338,640,000	16,932,000	16,932,000	40,636,800	40,636,800	40,636,800	40,636,800	40,636,800	101,592,000
	3	2층	342,150,000		35,382,783	306,767,217	342,150,000	17,107,500	17,107,500	41,058,000	41,058,000	41,058,000	41,058,000	41,058,000	102,645,000
	120	기준층	346,540,000		35,382,783	311,157,217	346,540,000	17,327,000	17,327,000	41,584,800	41,584,800	41,584,800	41,584,800	41,584,800	103,962,000
	6	최상층	359,720,000		35,382,783	324,337,217	359,720,000	17,986,000	17,986,000	43,166,400	43,166,400	43,166,400	43,166,400	43,166,400	107,916,000
166	4	1층	393,300,000		42,845,350	350,454,650	393,300,000	19,665,000	19,665,000	47,196,000	47,196,000	47,196,000	47,196,000	47,196,000	117,990,000
	4	2층	397,260,000		42,845,350	354,414,650	397,260,000	19,863,000	19,863,000	47,671,200	47,671,200	47,671,200	47,671,200	47,671,200	119,178,000
	200	기준층	402,370,000		42,845,350	359,524,650	402,370,000	20,118,500	20,118,500	48,284,400	48,284,400	48,284,400	48,284,400	48,284,400	120,711,000
	8	최상층	417,980,000		42,845,350	375,134,650	417,980,000	20,899,000	20,899,000	50,157,600	50,157,600	50,157,600	50,157,600	50,157,600	125,394,000
212	1	1층	505,940,000		56,466,076	449,473,924	505,940,000	25,297,000	25,297,000	60,712,800	60,712,800	60,712,800	60,712,800	60,712,800	151,782,000
	1	2층	511,080,000		56,466,076	454,613,924	511,080,000	25,554,000	25,554,000	61,329,600	61,329,600	61,329,600	61,329,600	61,329,600	153,324,000
	50	기준층	517,510,000		56,466,076	461,043,924	517,510,000	25,875,500	25,875,500	62,101,200	62,101,200	62,101,200	62,101,200	62,101,200	155,253,000
	2	최상층	537,440,000		56,466,076	480,973,924	537,440,000	26,872,000	26,872,000	64,492,800	64,492,800	64,492,800	64,492,800	64,492,800	161,232,0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차량의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 최소면적을 초과하는 지하주차장 면적 및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펌프실/전기실, 휘트니스센터, 취미실, 문고, 입주자회의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 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 또는 2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자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 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재(지상건축물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계약금2차 및 중도금, 잔금의 납부 예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납부일은 익영업일로 함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당 사업자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를 특별 공급함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본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특별공급
- 3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6항에 의한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3. 14) 현재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범위내(12세대)에서 특별 공급함
  - 청약예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에도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이 제한됨
- 중복 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과 신청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 처리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시 · 도로 봄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의 처리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사 견본주택 방문 신청
- 신청일시 및 장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 2008. 3. 19 (수) (10:00~15:00) 당사 견본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
    ① 85점 이상 : 2008. 3. 19 (수) (10:00~12:00) 당사 견본주택
    ② 85점 미만 : 2008. 3. 19 (수) (13:00~15:00) 당사 견본주택 (85점 이상 신청자가 공급량을 초과할 경우 85점 미만은 접수하지 않음)
- 동 · 호수 추첨 일시 및 장소 : 2008. 3. 19 (수) 16:00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일 내
- 특별공급 구비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배점기준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인 인정받고자 하는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무주택 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신청미달 또는 부적격 처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

주 택 형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계
	3자녀 (3%)	가점제 (50%)	추첨제 (50%)	소계	
145	4	64	64	128	132
166	6	105	105	210	216
212	2	26	26	52	54

○ 일반공급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3. 14) 현재 충청북도 청원군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에게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당 주택에 공급 신청할 수 없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1순위 주택당첨자 중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청약을 받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 청약이 불가(신청주택 전체를 무효처리)
  – 동일 세대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동일 세대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중복 당첨되기 전에 먼저 당첨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계약)
- 충청북도 청원군 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예치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까지 거주지역의 해당 평형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한 경우 청약이 가능하며 단,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예치금액을 변경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함
- 신청자격

구분	순위	면적구분	청약관련예금 및 신청자격
민영주택	3자녀 특별공급	전주택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만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재당첨 금지 적용자 제외)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선정함
	1순위	전주택형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각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자혜택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2호 또는 2세대 주택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당 주택에 공급신청할 수 없음
	2순위	전주택형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각 주택형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청약 접수일정 및 장소

구분	순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특별공급(3자녀)	충청북도	2008.3.19(수)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시간 : 10:00 ~ 15:00	– 일시 : 2008. 3. 19(수) 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1순위	청원군	2008.3.20(목)	– 장소 :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 청약 – 접수시간 : 08:30 ~ 18:00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일자 : 2008. 3. 28(금)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2008. 3. 28(금) 일자 ※ 당첨자 명단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대략적인 기능성 확률에 응답하지 않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2순위	청원군	2008.3.21(금)		
	3순위	청원군	2008.3.24(월)	– 장소 : 농협중앙회 본 · 지점 – 시간 : 08:30 ~ 18:00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에서 청약 가능함 (창구접수는 창구접수시간 9:30~16:30)
○ 가점제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의 2에 의거 1,2순위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가점제로 공급함
-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규칙 별표 1)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④ 감점	•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 + ② + ③) – ④] = 점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① 무주택 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주택으로 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기산함 • 60㎡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를 10년 이상 보유한 자가 60㎡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1호를 보유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②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단,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포함)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1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주자저축 종류, 금액, 가입자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④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기준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기타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등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기 바람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불가하나, 1순위 추첨제로 신청가능하며, 2순위(6개월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무주택기간에 0점 처리함 • 감점점수가 전체기점 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인터넷 청약 신청안내]

구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1, 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에 해당하는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① 서약서 작성(무주택기간, 세대주 기간등 직접기입, 공공분양 및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② 청약신청서 작성 ③ 청약신청서 내용 확인 ④ 접수증 발급 ※ 청약시간 : 08:30~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아파트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기 타	•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직접확인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당일 마감시간(18:00)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취소 또는 취소 후 재신청)할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은 가구주, 거주지, 무주택 확인을 위한 모든 정보를 청약자가 직접 입력해야함 •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우선 개인용 공인인증서(단체용의 특수 목적으로 발급된 인증서는 사용불가)가 있어야함 ※ 방문접수(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등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에서 청약가능 (창구접수시간 : 09:30~16:30)	

[경과기간 및 요건]

- 면적변경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경과 시마다 회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변경한 전용면적으로만 청약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평형만 청약신청 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평형만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예금 가입일로부터 기산
- '94.8.15일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1순위 청약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주택공급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용도가 다른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시업주체나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85㎡ 이하의 단독주택
  ③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사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주택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주 인정기간의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①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신청접수 방법]

- 공통 : 충별, 동별, 향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 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적으로 하되 청약접수 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선택이 불가하여 가점제로 자동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 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 접수함)
- 3순위 : 중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자에게 우선공급하고 5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한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서는 수정과 해지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창구 청약자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농협중앙회 본 · 지점) • 청약예금 통장(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감(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100만원 • 청약신청금 환불계좌 사본(3순위 신청자에 한함)